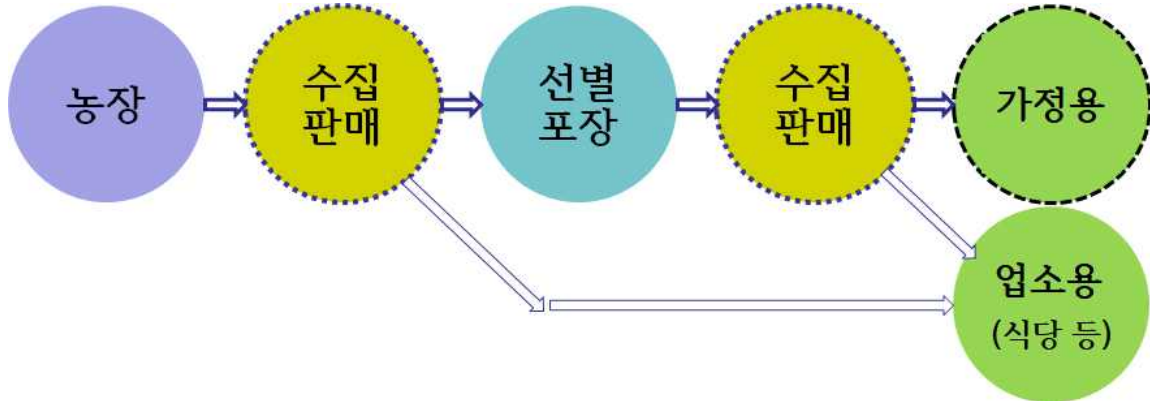


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(해썹)인증 안내문

□ 2019.4.25.부터 가정용 달걀(소비자 판매)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·포장하여야 합니다. <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>

※ 계도기간 : 2019.4.25. ~ 2020.4.24.



□ 선별·포장된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재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HACCP인증이 필요합니다. <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4>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결과, 계도기간 이내에는 가정용 달걀을 농장에서 입고하셔도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이 가능합니다.

○ 단, 계도기간 종료 시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경유하여야 하며, 관리기준서를 수정하여 HACCP인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.

◎ HACCP인증 준비

주요 필요서류		비고
HACCP 관리기준서	표준기준서 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영업장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(기록)	www.haccp.or.kr 고객센터 → 자료실 → HACCP종합자료실
HACCP 교육 수료증	① 영업자(4시간) 이수 ② 종업원(24시간) 이수 ※ 1인 사업장은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만 이수하여도 인정	• 교육 일정 확인: www.haccp.or.kr • 교육 신청: fresh.ihaccp.or.kr
HACCP 심사신청	① HACCP 인증심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필증 1부(앞/뒤) ③ HACCP관리기준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	www.haccp.or.kr HACCP → 절차안내 → 민원서식 → 축산물 인증(연장)신청서

※ 계도기간 종료(20.04.24.) 이전 3~4월경 HACCP인증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, 물리적 한계(심사인력, 소요기간 등)로 계도기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. (민원처리기한 60일)

◎ 기술지도(내원상담) 문의(사전 예약제)

서울·강원·경기북부(02-860-6900)	경기·인천(031-390-5200)
부산·울산·경남(051-933-0100)	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(062-380-0500)
대구·경북(053-741-5210)	대전·충청·세종(042-251-1169)

※ 기타 문의 : 유통인증팀(043-928-0132)

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